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섬김노인돌봄지원플랫폼(장기요양) 운영규정 중’

제4장 이용 계약

제9조 (계약의 목적) ① 기관과 대상자(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 기관에서의 요양서비스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기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5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① 등급별 월 이용료 및 이용한도액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재가급여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및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의거하여 부담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이용자는 전액 감면한다.

③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요양서

비스 등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제16조 (계약 해제 등 기타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이 정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어려울 경우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전염성 질병등)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②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섬김노인돌봄지원플랫폼(장기요양)

운영규정 개요 및 총칙

제1장 운영규정 총칙

제1조 (목적)	7
제2조 (적용범위)	7
제3조 (규정준수 의무)	7

제2장 서비스 제공의 목적 및 유형

제4조 (서비스 제공의 목적)	7
제5조 (제공 서비스 유형)	7

제3장 이용대상 및 이용자 모집 방법

제6조 (이용대상에 관한 기준)	8
제7조 (이용대상)	8
제8조 (모집방법)	8

제4장 이용 계약

제9조 (계약의 목적)	9
제10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9
제11조 (신원 인수의 권리와 의무)	9
제12조 (이용절차)	10
제13조 (계약기간)	10
제14조 (서비스 이용계약)	10
제15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11
제16조 (계약 해제 등)	11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1
제18조 (서비스의 내용)	12
제19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12
제20조 (서비스 제공행위 금지)	12
제21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12
제2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3
제23조 (기록 및 보존)	13

제6장 특별한 보호 서비스 기준 및 비용

제24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13
제25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기준)	14
제26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비용 및 관리)	14

제7장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제27조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의 절차)	14
--------------------------------	----

제8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2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범위)	15
------------------------------------	----

제9장 인사관리규정 총칙

제29조 (목적)	15
제30조 (적용기관 및 범위)	15
제31조 (근로자의 구분 및 적용제외)	15
제32조 (직원의 정원)	16
제33조 (직원의 자격기준)	16
제34조 (규정준수 및 상호 협력의무)	16

제10장 채용

제35조 (직종의 구분)	16
제36조 (채용 기준)	16
제37조 (채용 제한)	16

제11장 근로계약

제38조 (수습기간)	17
제39조 (직무내용)	17
제40조 (계약해지)	17

제12장 복무

제41조 (복무의무)	18
제42조 (서비스제공 종사자의 의무)	18
제43조 (서비스제공 시 준수사항)	18
제44조 (서비스제공 종사자 관리).....	19
제45조 (서비스제공 종사자의 근무시간)	19
제46조 (근무평정)	19

제13장 인사발령 및 승진

제47조 (인사발령의 원칙)	19
제48조 (승진의 원칙)	19
제49조 (승진의 제한)	20

제14장 보수(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제50조 (임금 및 상여금 기준)	20
제51조 (임금의 산정 및 지급)	20
제52조 (사회보험 가입 및 공제)	20
제53조 (퇴직급여 적립 및 지급)	20

제15장 휴일 및 휴가

제54조 (휴일)	21
제55조 (휴일 근로)	21
제56조 (휴가 사용).....	21

제16장 복리후생

제57조 (복리후생의 원칙)	21
제58조 (상해보험)	21
제59조 (업무용품 및 업무지원)	21

제17장 직원포상

제60조 (직원포상)	22
제61조 (포상방법 및 절차)	22

제18장 징계 및 해고

제62조 (징계)	22
제63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22
제64조 (징계사유)	22
제65조 (징계의 예외)	23
제66조 (해고사유)	23
제67조 (해고 등의 제한)	23
제68조 (해고의 예고)	24
제69조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	24
제70조 (본인에 준하는 징계)	24
제71조 (경고)	24

제19장 퇴직

제72조 (퇴직기준 및 당연퇴직)	24
제73조 (퇴직절차)	24
제74조 (업무인수인계 절차)	25

제20장 교육 및 훈련

제75조 (교육 및 훈련의 원칙)	25
제76조 (교육의 종류)	25
제77조 (인권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25
제78조 (사후관리)	25

제21장 안전 및 보건

제79조 (안전 및 보건 수칙)	26
제80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26
제81조 (안전교육)	26
제82조 (보건수칙 준수 및 건강검진)	26
제83조 (재해보상)	26

제22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제84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27
-------------------------------------	----

제23장 윤리경영

제85조 (목적)	27
제86조 (적용대상)	27
제87조 (준수 의무와 책임)	27

제24장 인권보장

제88조 (목적 및 적용)	28
제89조 (기관장의 의무)	28
제90조 (인권교육의 실시)	28

제25장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과 처리

제91조 (성희롱의 금지)	28
제92조 (성희롱 예방교육)	28
제93조 (성희롱 발생 시 조치)	28

제26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제9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28
제9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28
제9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28
제9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28

제27장 고충처리

제98조 (고충처리)	29
제99조 (고충처리의 절차)	29

제28장 운영위원회

제100조 (목적)	29
제101조 (위원회의 기능)	29
제102조 (구성 및 임명)	29
제103조 (회의)	30

제29장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제104조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30
제105조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	30

부칙	31
----------	----

섬김노인돌봄지원플랫폼(장기요양) 운영규정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섬김노인돌봄지원플랫폼(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기요양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요양 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행과 종사자의 근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며,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규정준수 의무) 기관의 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고 동료 간 상호 협력하며, 기관의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업무에 임한다.

- ① 직원은 관계 법령,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 수행한다.
-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기관의 신뢰를 높이고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용자나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않는 청렴한 자세를 유지한다.
- ④ 직원은 정당한 사유나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 ⑤ 직원은 업무 능력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 목적의 활동 또는 정치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 ⑥ 직원은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를 존중하여 서비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모든 과정에서 이용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한다.
- ⑦ 직원은 이용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